2023. 3. 20(월). 10:00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〈 안건명 〉

도시관리계획(시설:근린공원)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

도시관리계획(시설:근립공원)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의견청취안은 2023년 3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제21조에 따라 2023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화도읍 마석우리 222-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마석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사업기간 만료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재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근린공원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제6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근거법령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제7항

3. 관계법령 및 지침

- 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 및 제43조
- ○「도시、군계획시설의 결정.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
- ○「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

4. 사업개요

○ 위 치 : 화도읍 마석우리 222-1번지 일원

○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

○ 규 모 : A = 59,113m²

○ 입 안 자 : 남양주시장(공원조성과)

○ 총사업비 : 약 10,000백만원

5. 주민 의견청취 결과

○ 공람·공고

- 기 각 : 2023. 1. 5. ~ 2023. 1. 19.

- 공람장소 : 남양주시청(도시정책과, 공원조성과, 당직실), 신문

- 공람결과 : 주민의견 1건

의견청취 결과요약

○ 지난 20년간 공원부지로 결정이 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고, 지난해 시효가 끝나 수익이 있는 재산으로 대체 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또다시 공원부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함.

○ 수익용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요청.

조치의견

○ 화도읍 구시가지 내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수렴하고, 편의시설 설치와 사업지 중앙에 위치한 조지훈 시인 묘소의 보존 및 테마를 활용한 자연과 인문이 융합된 도시지역 내 명품 여가 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.

○ 장기미집행시설인 해당 근린공원의 실시계획인가 종료 및 시설결정 실효 후 부득이 재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함과 동시에 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였으며,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포함한 행정절차의 진행과 병행하여, 편입용지 소유주와의 협의보상(불가 시 수용재결)을 금년 중에 완료 후 익년도 사업준공을 목표로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드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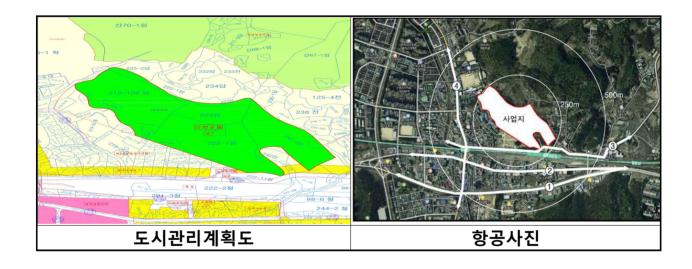
6. 주요 입안내용

-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 결정(안)
 - 공원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치	면적 (m²)	최 초 결정일	비고
신설	202	공원	근린공원	화도읍 마석우리 222-1번지 일원	59,113	-	

- 공원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202		• 신설 A = 59,113m²	•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함.



7. 향후 추진계획

○ 2023. 4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3. 4. :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

○ 2023. 6. ~ 2023. 12. :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

○ 2024. 1. : 공사착공

8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증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화도읍 마석우리 222-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마석근린공원 조성사 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사업기간 만료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재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본 결정(안)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시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화도읍 구시가지 내 부족한 공원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용역 발주와 토지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절차 이행후 2024년도 말 까지 사업을 준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2023년 3월 15일 도시교통전문위원 윤선기

붙임 1

관계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약칭: 국토계획법)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①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 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들어야 한다.
- 1.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
- 2. 제30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,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·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

-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 ·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
-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민"은 "지방의회"로 본다.
- ⑧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· 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 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 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